

멕시코, 에너지개혁법 관련 현황

(2014년 1월 27일)

멕시코시티사무소

[추진 경과]

□ 에너지 개혁법안 공포 후 시행령 마련 중

- 2013년 8월 페냐 니에또(Pena Nieto) 정부는 국유화된 에너지 산업의 대외개방을 위해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 사업자의 에너지산업 진출을 허용하는 에너지 개혁법안을 제출함.
 - 동 법안은 동년 12월 멕시코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뒤 20일 공포됨.
- 2014년 멕시코 의회는 관련 시행령 마련 중에 있으며 4월 마무리할 예정임.
 - 개정헌법 공포 후 멕시코 의회는 120일 이내 관련 하위법을 마련·공포해야함.

<표 1> 2013년 에너지 개혁법안 추진 내용

일 정	추진 내용
8월 12일	법안 제출
12월 10일	상원 통과
12월 12일	하원 통과
12월 15일	31개 주정부 중 17개 주정부 승인 (과반수 확보)
12월 20일	에너지 개혁법 공포

[주요 의제]

□ 에너지개혁법 관련 구체적 제도 논의

○ 멕시코 의회는 현재까지 총 5차에 걸친 원유 및 에너지 포럼을 통해 여러 의제를 논의하고 있음.

* 석유기금 : 멕시코 중앙은행(Banco de Mexico)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석유 개발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을 재원으로 함.

<표 2> 에너지개혁법 관련 주요 의제

주요 의제
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국산화 비율 설정
자원개발시 용지사용권 보장 방안(토지소유주 권리보장 포함)
에너지 신규탐사 및 개발에 따른 환경부담금 부과방안
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자 보호망 마련
전국 단위 주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및 배전망
연방전력청(CFE)의 전력요금 요율표 수정가능성 검토
멕시코 재정부(SHCP)의 석유기금 참여방안 모색 등

[향후 전망]

□ 현지 언론들은 여야간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예정된 일정대로 관련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.

□ 민간기업은 단독으로 입찰참여 및 계약이 가능하나, 단기적으로 페멕스(PEMEX) 등 멕시코 국영기업과의 합작사업이 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.

□ 한편, 금번 시행령 통과 후 전기, 가스 등 에너지요금 인하 효과 등은 2016년 이후부터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며, 석유기금을 통해 연간 GDP 4.7%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 재정으로 확보할 계획임.

붙임 : 에너지개혁법 주요 내용

<붙임>

에너지개혁법 주요 내용

1. 국가 독점체제로 운영되었던 석유 등 에너지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진입 허용 (단, Petroleos Mexicanos(PEMEX)는 국영기업으로 계속 존속)
2. 석유자원의 탐사 및 생산, 가스처리, 정유, 저장, 공급 및 전력 생산 및 판매를 민간에 개방
 - ① 국가는 석유 판매로 얻은 일정 수익 혹은 석유 생산을 통해 취득한 자원의 일정부분을 민간투자기업에 지급
 - ② 에너지부는 국가탄소자원위원회를 통해 매장량 정보 수집, 입찰 진행, 낙찰자 선정, 석유자원의 탐사 및 생산을 위한 계약 체결 담당
 - ③ 에너지규제위원회는 석유 및 천연가스의 공급 및 운송, 저장 허가권 및 석유와 상업용 천연가스의 일차판매 권한 보유
 - ④ 국립천연가스관리센터는 천연가스의 운송 및 저장을 위한 국가 가스관 관리시스템 관장
3.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 유형
 - ① 서비스 계약 (지분 보유 없이 서비스제공에 대한 용역비 수령)
 - ② 이익분배계약 (상호 약정된 비율에 따라 발생이익을 분배)
 - ③ 생산물 분배계약 (사전 계약조건에 따라 생산된 자원을 분배)
 - ④ 라이선스 계약 (탐사 및 채굴권한 부여 포함 자원개발 참여) 등

4. 전력시스템 관리는 국가에너지관리센터를 통해 정부가 계속 운영하되, 민간부분의 전력 판매는 동 기관의 감독 및 계약을 통해 가능
5. 석유산업 종사 근로자의 노동권은 보장하되, 노조의 회사경영 참여 등은 배제
6. Petroleos Mexicanos(PEMEX) 및 연방전력청(CFE)의 독립적 재정 운영권 부여